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7월 11일 송원기의원 외 23명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7월 1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37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7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건설교통위원회 송원기의원)

□ 제안이유

- 일반주택지역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공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건립되었고 입주자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일반주택지역의 가로등, 보안등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현실에 비추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가계비 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복지증진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하도록 함.
(제12조제1항6호 신설)
- 나. 보조금을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함.(제12조제5항 단서조항 신설)
- 다. 시장은 공동주택지원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 라. 시장은 제11조와 본조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비용에 대하여는 전력공급자 및 사업시행자가 소요비용을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의한 대금을 납부 할 수 있다.(제13조제3항 신설)
- 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4항 신설)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 영구임대아파트에 전기료를 지원하는 타지방자치단체는 있는지?	○ 서울 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 성남시가 주택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또한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 단체는 부산 사상구 외 10개 시군임.
○ 전기료를 지원하면 주민들이 전기료 사용량이 많이 증가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주민들의 의식과 생각이 많이 향상되어있음. 문제점 있으며 주민에게 홍보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제1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지원신청서”를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6호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에 대하여는 전력공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비용을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따라 전기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6호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14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 ~ ③ (생략)</p> <p><u>〈신설〉</u></p>	<p>③ <u>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6호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에 대하여는 전력공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전기료를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따라 전기료를 납부할 수 있다.</u></p> <p>제14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다만, 제12조제1항제6호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에 대하여는 <u>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

부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5호
의결년월일	2007. 7. 19 (제137회)

발의년월일 : 2007. 6. 29.

발 의 자 : 송원기의원등24인

□ 제안이유

- 일반주택지역은 시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공공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국가정책사업으로 건립되었고 입주자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저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 영구임대아파트단지 안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일반주택지역의 가로등, 보안등 요금을 시에서 부담하는 현실에 비추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부과되는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가계비 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복지증진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시에서 지원하도록 함.

(제12조제1항 6호 신설)

나. 보조금을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되어있으나,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신설함.(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조항 신설)

다. 시장은 공동주택지원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단서조항 신설)

라. 시장은 제11조와 본조 전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6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비용에 대하여는 전력공급자 및 사업시행자가 소요비용을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의한 대금을 납부 할 수 있다.(제13조제3항 신설)

마.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은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4조4항 신설)

□ 참고자료: 별 첨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제12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지원신청서”를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6호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에 대하여는 전력공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리비용을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따라 전기료를 납부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6호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제14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 ~ ③ (생략)</p> <p><u>〈신설〉</u></p>	<p>③ <u>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6호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에 대하여는 전력공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전기료를 청구하게 할 수 있으며, 청구서에 따라 전기료를 납부할 수 있다.</u></p> <p>제14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다만, 제12조제1항제6호의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에 대하여는 <u>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u></p>